

# 돼지콜레라 박멸대책 추진현황

-국립수의과학검역원-

## 1. 사업의 목적 및 배경

○OIE(국제수역사무국) 지정 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를 2000년까지 근절하여 대일본 수출 양돈산업으로 육성

○일본은 '92년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으며 2001년에는 근절선포 예정으로 최종단계 대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에도 이 병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

## 2. 질병의 특성

○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법정 전염병으로 감염된 개체는 연령에 관계 없이 폐사하므로 경제적 피해가 큼

○접촉 또는 경구감염으로 신속히 전파

되며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 함

○적기에 백신을 접종한 개체는 완벽하게 예방되므로 발병하지 않음

○돼지 이외의 동물과 사람에는 전염되지 않음

## 3. 국내발생 상황

○년도별 발생상황(농림부 통계)

○'98 돼지콜레라 지역별 항체분포 조사(수의과학검역원)

- 전국 도축장 출하돈 1,650 농가 10,697두 검사결과

양성 : 7,759두(72.5%), 음성 : 2,938두(27.5%)

- 제주도 항체양성률은 10.3%로 전년대비 2배 감소('97년말 20%)

-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항체양성률은 76.1%로 전년대비 7.4% 증가

- 국내 출하돈의 60%가 혈청 중화항체가 16~64배로 일본의 64~256배 보다 다소 낮은 경향



<표1> 연도별 발생상황(농림부 통계)

구분	'91	'92	'93	'94	'95	'96	'97
발병농가수	26	24	24	19	14	39	20
발생두수	1,794	1,327	1,353	1,525	1,037	4,498	1,012

\* '98년 7월 현재 4건 702두 발생

입

-항체양성률과 항체역과 수준이 낮은 원인은 조기이유시(생후 20~25일)에 백신을 접종하고 2차 접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

#### 4.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방향

##### 가. 사업개요(5개년 계획으로 2001년 청정화 목표)

○1단계(2년) : 전국적인 생독백신 접종 강화(45.4%→95% 이상)(피해최소화) 감염돈군의 이동제한 및 감염개체 살처분 보상

○2단계(2년) : 생독백신접종 금지 및 유사시 대비 유전자재조합백신 비축(청정화 조성) 감염돈군의 도태 보상

○3단계(1년) : 백신접종 금지 및 청정화 유지 확인(근절 확인) 검역강화로 국내 유입 차단

##### 나. 주요 추진 대책 및 실적

■공동방역 사업 실시단 구성 및 운영(53개소)

○목적 : 주요 전염병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로 양축농가와 생산자 단체 중심의 지

역공동방역사업단 편성 및 공동방역 실시

○근거 :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운영요령(농림부 훈령 제882호, '96. 12. 31)

○사업단 구분

-중앙 : 축협중앙회(단장 : 경제담당 부회장)

- 시도 : 축협도지회, 축종별 업종조합

(단장 : 도지회장 또는 업종조합장)

-시군 : 지역축협 또는 양돈·양계단체지부(단장 : 조합장 또는 시군지부장)

○시군사업단 구성 : 업종조합회원 농가, 계열사업 농가, 전기업 농가, 공개업 수의사, 방역요원 등

업무 : 예방주사 실시 및 증명서 발급, 공수의 동원 확인, 병성감정의뢰, 방역위반농가 고발, 살처분 보상평가 참여 등

■가축전염병 발생 조기신고 체제 확립(제도개선 '97.5)

○살처분 보상금 제도개선 : 80%→차등지급(100, 80, 60, 40%)

-조기신고 농가, 지체신고 농가, 미신고자·검사거부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및 과태료 부과, 고발조치

○축산단지에 방역기술 지도 및 발생신고 농가의 불이익 해소방안 추진

■병성감정 및 검진업무 기능강화

○수의과학검역원 : 병성감정반, 진단용 특수차량(Lab, Car) 운영

○병성감정실시 지정기관 확대 : 현재 10개 대학 및 7개 민간연구소 지정

○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기능강화 대책

-방역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의식교육 실시

-특수 소각시설 지원 : 9개도에 1~2기씩 설치지원

-기동방역 차량 : ('97) 28대  
-검사 장비 : ELISA Reader 15대 등

■도축장·도계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

○가축 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 제정고시('98.2)

○소독시설 설치비 지원 89개소

■가축방역관련 제도개선 추진  
○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'97. 3)

-현행 살처분 가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평가액 80% 지급 기준을 40~100%까지 4단계로 구분, 차등지급

○위생 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요령 제정고시('96. 9)

-'98년 7월 현재 3개소 인증완료, 1개소 인증검사 진행중



일본은 '92년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으며 2001년에는 근절선포 예정으로 최종단계 대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에도 이 병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

### 5. 근절대책 수행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

문 제 점	해 결 방 안
<p>〈양돈농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장의 차단방역, 소독, 격리 등 위생관리 미흡</li> <li>○양축농가의 방역의지 결여로 백신 접종미흡, 예방조치 미실시</li> </ul> <p>〈정책 및 제도개선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국가 방역조직의 다원화로 효율적인 방역실시 지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농림부 : 축산위생과, 수의과학검역원</li> <li>-내무부 :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</li> <li>* 일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임</li> </ul> </li> <li>○전염병 발생 은폐 및 신고기피로 질병 전파 및 확산</li> <li>○양돈단지 조성시 위생시설 및 질병관리를 위한 기본개념 미고려</li> <li>○전염병 발생시 국가방역에 대한 불신감 및 피해의식 팽배</li> <li>○살처분, 도태시 보상금 지연</li> <li>○방역활동을 위한 양돈업계 자조금 조성 부재</li> <li>○질병발생 추적 및 조사를 위한 도축장 활용체계 미흡</li> <li>○가축 중계인과 가축 및 분뇨 수송 차량에 의한 질병 전파 심각</li> <li>○생산자 주도 자율방역 조직의 방역 활동 미흡</li> </ul> <p>〈방역기술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야외에서 적용가능한 진단기술 요구 증대</li> <li>○백신접종시기 미준수(조기이유시 1회만 접종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홍보교육 강화</li> <li>○홍보교육 강화</li> <li>○시도 방역사업단에서 실시 및 확인</li> <li>○농림부 축산국에 방역과 신설</li> <li>○가축위생시험소의 책임과 권한강화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수의제도개선 : 비개업 수의사로 임명하여 시험소의 방역요원으로 활용</li> <li>- 가축방역관의 준사법권 부여</li> <li>- 상벌 확대로 사기진작</li> </ul> </li> <li>○살처분 보상금의 차등 지급 홍보 강화</li> <li>○고의로 은폐시 고발 등 법적조치</li> <li>○기조성된 양돈단지의 구조개선</li> <li>○신규 단지 조성 지양</li> <li>○1종 및 2종 가축전염병 지정 개선</li> <li>○홍보교육 강화</li> <li>○신속한 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지급제도 도입</li> <li>○자조금 조성 유도(도축세에 부가가능)</li> <li>○도축장의 시설개선(체혈, 검사대, 소독 시설 등)</li> <li>○도축되는 가축의 원산지 증명제도 도입</li> <li>○타 지역 도축장으로의 이동제한(표준 경락가 적용, 가축이동 증명서 등)</li> <li>○중계인과 수송차량의 등록 및 소독의무 규정 제도화</li> <li>○시군 공동방역사업 실시단의 운영이 생산단체에서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병력특례요원의 확보 활용</li> <li>○신속 진단키트 조기 개발(20분내 진단)</li> <li>○모체이행항체에 간섭받지 않는 유전자 재조합백신 개발 연구강화</li> </ul>

## 6.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역할분담

구 분	업 무
양돈농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장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소독 실시</li> <li>○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한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방접종 실시 기록유지</li> </ul> </li> <li>○환축조기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히 위축돈에 대한 병성감정의뢰</li> </ul> </li> <li>○무분별한 돼지구입 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판매농장에 대한 질병상태 확인 및 예방접종 기록 징구</li> <li>- 신규 입식돈에 대한 일정기간 격리검역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○잔반은 열처리후 급여</li> </ul>
생산자단체 (공동방역사업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홍보</li> <li>○공동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</li> <li>○참여농가의 방역지도 및 병성감정의뢰</li> <li>○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에 대한 지도 교육</li> </ul>
시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예방약품 등 지원</li> <li>○양돈농가 현황파악 및 순회점검</li> <li>○발생시 초동방역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동제한, 차단, 소독 및 살처분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○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지도 교육</li> <li>○도축장, 가축수송차량의 소독실시 및 지도 감독</li> </ul>
시도 (가축위생시험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시도별 돼지콜레라 근절계획 수립 추진</li> <li>○예방약품 등 지원</li> <li>○도축장 출하돈 항체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혈 등 검사지원</li> <li>- 항체 음성돈 출하농장에 대한 계도</li> </ul> </li> <li>○현장 방역지도 및 추적조사 실시</li> </ul>
검역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돼지콜레라 방역대책반 운영</li> <li>○돼지콜레라 연구 및 기술지원</li> <li>○돼지콜레라 검사키트 생산, 항체 및 항원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축 및 의심축에서 바이러스 분리 동정</li> </ul> </li> <li>○발생지역의 역학조사 및 발병원인 추적</li> <li>○돼지콜레라 홍보 및 교육 실시</li> </ul>
농림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총괄</li> <li>○돼지 질병분과위원회 운영</li> <li>○방역 예산지원</li> <li>○홍보, 교육 및 현장지도 등</li> </ul>